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문화체육과)

의안번호	제169호
제 출 자	소형준 의원 외 11명(2023. 8. 21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, 대통령 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, 서울특별시도 서울시 다자녀 지원계획 발표 및 다자녀 가족을 위한 이용료 감면 확대 협조 요청을 시행하였음. 이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도서관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: 100분의 50 감면 가능(안 제9조제2항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문화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
4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제4호¹⁾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에 대해 도서관 사용료 50%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다둥이 행복 카드²⁾ 소지자에게

1) 제9조(사용료의 면제 등) ②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
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

2) 다둥이 행복카드 : 국가지원제도로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정에 대해 민간기업과 함께 다양한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카드. 연회비 없이 발급 가능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서울시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50% 할인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음.

□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16일,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‘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’을 발표,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.

-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(11월 시행)
- 자동차 취득세 면제·감면(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, 취득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)
- 문화시설(국립극장·박물관 등) 이용료 할인
-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‘신속처리제(패스트트랙)’ 도입 검토
- 초등돌봄교실·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(지원 대상 확대, 본인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)
- 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(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)
- KTX·SRT 철도 운임 할인: 약 30% 철도운임 할인 혜택
- 전기, 도시가스 등 지원: 전기, 도시가스,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
-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
-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
- 공영주차장 50% 감면(서울)
- 다자녀 우대카드(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.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, 주차비, 놀이공원,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.)

50% 할인을 적용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- 2020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.84명, 2021년도 0.81명, 2022년 0.78명, 2023년 2분기 0.7%로 출산율이 더욱 감소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
- 대통령 직속 ‘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’는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‘21~’ 25)에 따라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자 다자녀 지원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각종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‘다둥이 행복카드’ 소지자 모두에게 50%의 감면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